

J. S. Mill의 「自由論」에 관한 研究

鄭 鎮 午

I 序 論

John Stuart Mill(1806~1873)의 代表的 著書인 「自由論」의 原稿는 1857년에 完成되었고 冊은 그 2年後인 1859년에 出刊되었다. 그 以後 百餘年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內容에 對해서 曰可曰否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Mill은 그의 自叙傳에서 「自由論」을 “人間과 社會에 對한 性格의 多樣性의 重要性 그리고 數 많은 衝突하는 方向으로 人間의 本性을 擴大하기 爲해 그것에 充分한 自由를 賦與하여야 한다는 重要性이라는……單一의 眞理에 對한 哲學的 教科書”¹⁾로서 描寫하고 있다.

그의 主題는 一般적으로 社會가 個人에 對해서 行使해야만 하는 權力의 本質과 程度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質問의 背後에는 當時의 文明社會의 傾向들이 人間行動의 모든 重要한 分野에서 窮極적으로 自發性을 絶滅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그의 恐怖感이 있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더구나 Mill의 生存當時의 社會改革家들 特히 Comte의 大部分의 改革은 實際로 自由를 破壞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恐怖는 이 期間보다도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始作되었다. 그러한 恐怖感은 1836년에 出刊된 “文明”에 對한 論文에서 明白히 表現되었으며 심지어는 그보다도 數年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正確한 證據가 있다.²⁾

Mill은 또한 道德的 抑制力을 가진 機關은 社會的 問題에 對해서 보다는 個人自身에 關係되는 問題에 있어서 支配的 意見에 對해 拒逆하는데 權力을 더 行使해 왔다고 指摘하고 人間에게는 統治者의 地位에 있을 때나 같은 市民의 立場에 있을 때를 不問하고 “自己自身の 意見이나 좋아하는 것을 行爲의 準則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無理하게 強制하려는 性向이 있는데 이러

1) Autobiography (World's Classics edition), p.215.

2) F.A.Hayek, John Stuart Mill and Harriet Taylor(1951), p.216

한 性向은 人間本性에 附隨하는 어떤 種類의 最善의 感情과 最惡의 感情에 의해서 강력하게 支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權力을 없애는 것 以外에는 어떠한 手段으로써도 이것을 거의 抑制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權力이라는 것은 衰退되어 가기는 커녕 도리어 增大一路를 달려가고 있는 形便이므로 道德的 確信이라고 하는 鞏固한 障壁을 構築하여 그러한 害惡을 防止할 수가 없는 限 우리들은 現在와 같은 世界의 狀態下에서는 그 害惡이 더욱 增大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覺悟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

이처럼 Mill의 人間의 自由에 對한 權力의 侵害에 대한 恐怖는 當時의 形而上學的 合理主義者들의 改革思想에 對한 憂慮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Isaiah Berlin은 Mill이 固守하려고 하는 消極的 自由와는 區別되는 形而上學的 合理主義者들의 思想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기 때문이다.

“當爲性에 따라 事物을 理解함은 여기에 따라 意慾적 함을 意味한다. 知識은 우리가 選擇할 수 있는 諸可能性을 우리에게 公開함으로써 解放되는 것이 아니라 이 可能性을 意圖하는데 있어서의 混亂에서 우리를 保護함으로써 解放되는 것이다. 그들 以外의 다른 必然法則을 願함은 非合理的 慾望-X라야 할 때 X이어서는 안된다는 慾望-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必然的인 것이 아닌 諸法則을 믿음은 精神錯亂이라고 한다. 이것이 即 形而上學的 合理主義의 眞髓이다. 여기에 包含된 自由觀은 妨害가 없는 分野 即 내가 願하는데 따라 行動할 수 있는 空白에 있어서의 「消極的」概念이 아니라 自己指向 또는 克己의 自由觀이다.”⁴⁾

이러한 狀況에서 Mill은 個人의 自由가 權力으로 부터 保護되고 個性과 性格의 多樣性이 保存될 수 있는 方法을 모든 個人에게 思想과 行動의 自由의 領域을 賦與하는 原理가 發見되고 遵守되는데서 찾으려고 했다.

Ⅰ 自由의 原理의 두 原則

Mill의 自由에 대한 原理는 두 가지로 構成된다. 첫째는 어떠한 行爲때문에 그가 社會에 責任을 져야만 하는 어떤 사람의 바로 그 行爲의 部分만은 他人과 關係된다. 둘째는 單純히 그 自身에게만 關係된 部分에서는 그의 獨立은 마땅히 總對的이다. 各個人은 그 自身에 대해서 即 그 自身の 肉體와 精神에 對해서는 그 主權者인 것이다.⁵⁾

3) J.S.Mill, On Liberty, 李克燦譯, 三省出版社, 1978, p.244.

4)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Freedom", 閔丙台譯, 世界誌, 1959, 10月號, p.50.

5) J.S.Mill, op.cit., p.239.

그러나 이러한 原理의 適用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問題가 實際로 派生하는 것도 事實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利益을 위해 當然히 그를 強制해서 遂行케 해도 좋은 수 많은 積極의 行爲는 即 그것을 行하는 것이 分明히 人間으로서의 義務인 境遇에 그가 그것을 行하지 않는 것에 關해서 當然히 社會에 대해서 責任이 지워지는 것이 正當視되는 行爲도 있다. 그러나 가끔 그에게 責任을 지우지 않아도 좋은 充分한 理由가 있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理由는 그런 境遇의 特殊한 便宜인 事情으로 부터 생겨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即 社會가 可能한 어떠한 方法으로써 個人을 統制하기 보다는 個人의 自由裁量에 一任하는 便이 오히려 全體的으로 보아 個人이 보다 더 잘 行動할 可能性이 있어 보이는 境遇라든가의 理由에 起因되어야 할 것이다.

Mill은 “人類는 各個人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대로 生活케 하는 便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各 個人에게 強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고 말하여 어디까지나 個人의 自由를 尊重하는 立場을 取하나 이것이 現實과 背馳되는 理論이라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고 한다.⁶⁾

또 個人의 行動이 他人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境遇에 생기는 他人의 不便은 惡評에 關係되며 이는 他人에게 害를 끼치는 行爲와는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一切의 不確實한 일 에 대해서는 個人에게 맡기고 普遍的인 經驗에 의해 不當한 것만을 못하게 하는 것이 理想的이긴 하나 社會가 그의 監督權에 다가 그러한 制限을 둘 理가 萬無하다고 어디까지나 個人의 立場에 서고 있다.⁷⁾

그리고 社會는 그 社會에 대한 犯罪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는 權利를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社會固有의 權利는 純全히 自己에게만 關係되는 個人의 나쁜 行爲에 對해서 禁止나 處罰의 形式으로 干涉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하는 公理에는 分明히 限界가 있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賭博場 經營과 같은 問題는 個人自由와 社會福祉라는 두 原理의 바로 境界線上에 있는 것인데 이런 問題는 大多數의 實際的 問題에서와 같이 여러 境遇를 서로 區別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個人의 幸福은 이걸 追求하는 自由로운 行動이 許容되게 될 때 비로소 充分히 獲得되는 것이다.

이처럼 Mill은 무엇보다도 消極的 自由의 概念을 具體化하려는 것같은 印象을 強力히 주는 것을 否認할 수가 없다.

이러한 Mill의 自由의 原理는 人間의 行爲를 오직 行爲者에게만 關係되는 行動과 行爲者以外

6) Ibid., p.243.

7) Ibid., p.337.

의 他人에게 關係되는 行動이라는 두 個의 範疇로 分類할 수 있다는 可能性에 根據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批判되어 왔다. 卽 이 두 가지 範疇의 區別을 維持하기가 不可能하다고 되풀이 論議되어 왔으며 批判者들은 아무리 私的인 行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떠한 行動은 社會的 結果로부터 自由롭지 못하며 어떠한 人間도 그의 存在가, 하물며 그의 行한 바가 남이 아닌 그 自身만에 대해서 影響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指摘해왔다.

이러한 批判들에 있어 重要的 點은 Mill의 自由의 原理는 純粹한 行爲者 自身에게만 影響을 미치는 것과 같은 行動들의 存在에 그 原理의 妥當性을 依存하고 있다는 假定이 明白히 存在한다는 點이다.

自由의 原理에 대한 批判들을 살펴보면 1859년에 London Review는 “어떠한 道德的인 性質도 그것의 行爲에 있어서 그것의 所有者 自身の 歷史와 行動의 範圍에 制限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刺戟이 行爲者에게 限定되는 어떠한 行爲도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社會는 그 構成員들의 各人의 行爲에 있어서 單純한 自己防禦의 利益에 對해서 그리고 超越해서 利益을 갖는다”고 主張했다.⁸⁾

또 14年後에 Fitzames Stephen은 “自己에게 關係되는 行爲와 他人에게 關係되는 行爲를 區別하려는 試圖는 時·空에서 일어나는 行爲들을 區別하려는 試圖와 같다. 모든 行動은 어떠한 時間과 場所에서 일어나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行動은 우리 自身과 他人들에게 影響을 미치거나 미칠 수가 있다. … 그러한 區別은 모두 誤謬이고 無根據하다”⁹⁾

그는 이어 “모든 人間은 그에게 그의 同僚라는 關係와 같은 讓渡할 수 있는 關係에 있는 數百萬의 人間の 行動뿐만 아니라 思想, 느낌과 輿論에 깊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確實히 單純한 事實問題이다. …萬一 그가 世上에 홀로 存在한다면 그 사람은 몸의 나머지 部分이 없는 손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¹⁰⁾

한편 Ritchie는 個人은 그의 眞實한 自身을 “他人과 區別되고 分離된 세계에서 아니라 그들과의 모임에서” 發見하기 때문에 Mill의 理論에 含蓄된 個人의 概念을 抽象的이고 否定的인 것으로 考慮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가 人間社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絕對的인 分割이 없으며 모든 原子는 各己 다른 原子에 影響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더욱 發見한다”¹¹⁾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Ernest Barker 卿은 “어떠한 人間の 行爲도 單一의 全体이다”¹²⁾고 主張한다.

8) Vol. Xiii, p.274.

9) F. Stephen, Liberty, Equality, Fraternity, p.x, preface to the 2nd edition, 1874.

10) Ibid., p.128(1st edition, 1873).

11) D.G. Ritchie, The Principles of State Interference(1891), pp.96-98.

12) Ernest Barker,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1951), p.217.

그리고 Anschutz는 이 두 가지 行爲를 區別한다는 것은 아주 不可能하고 “그러한 區分을 하려고 試圖함으로써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¹³⁾고 까지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引用한 批判들의 要点은 Mill이 社會的 結果로 부터 自由로운 어떠한 人間行動을 잘못 假定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에 대해서 J. C. Rees는 傳統的인 論評은 Mill의 區別이 行爲者에게만 關係되는 (concerns) 行爲와 他人에게 關係되는 行爲 사이에 存在한다고 假定해왔다고 指摘하고 Mill의 表現을 仔細히 살펴보면 이러한 表現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他人의 利益(interests)을 侵害하는 行爲에 대해서 個人은 責任을 져야 한다는 表現에 注目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即 그는 Mill의 論文을 細密하게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은 表現들이 보인다고 한다. ‘what only regards himself’ ‘conduct which affects only himself’ ‘which concerns only himself’ ‘things wherein the individual alone is concerned’와 ‘concern the interests of others’ ‘affects the interests of no one but himself’ ‘affect the interests of others’ ‘damage to the interests of others’等.

Rees는 여기에서 ‘affecting others’와 ‘affecting the interests of others’사이에는 重要한 差異가 있으며 Mill은 單純한 ‘effects’가 아니라 ‘interests’를 생각했다는 句節이 있다는 점을 重視하고 있다.¹⁴⁾

人間은 그의 利害(interests)가 影響(affects) 받음이 없이 他人의 行爲에 의해서 影響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明白하다. 例를 들어 宗教的인 改宗은 그가 以前에 갖지 않았던 宗教에 있어서의 利害를 가지나 우리는 그러한 意味에서 利害에 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文學에 있어서의 내 利害는 最少限程度까지 影響받는 事業, 職業이나 財産의 利害와 같은 어떠한 것도 없이도 急進的인 變化를 堪當할 수 있다.

따라서 利害와 影響사이에는 區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利害로 認定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우리가 理性에 의해서 支持받아야 된다는 것을 要求해야만 한다는 主張이고 討論의 主題가 될 수 있다.

한편 나는 非常히 敏感한 本性을 가졌다는 單純한 理由만으로 他人의 行爲에 의해 매우 深刻하게 影響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弱點을 他人이 尊敬하도록 시키는 어떠한 要求도 利害로 되는 것으로 認定될 수 없다.

아마도 내가 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 하는 것이 他人에게 影響을 준다는 것은 眞實이다. 他人이 影響을 받지 않는다(또는 받을 수 없다)는 假定에 基礎한 어떠한 原理도

13) R.P. Anschutz, The Philosophy of J.S. Mill(1953), p.48.

14) J.C. Rees, A Re-Reading of Mill on Liberty, Political Studies, Vol. VIII. No.2(1960), p.118.

Mill에게 反對하기 위해 提示된 反對論에도 正確하게 드러내져 있다.

그러나 利害가 影響을 받는지 아닌지를 決定하는 것은 다른 問題이며 利害가 介入된 問題에 對한 社會的 干涉을 制限하려고 摸索하는 原理가 그것이 모든 原子는 모든 다른 原子에 影響을 주고 그것에 의해 影響을 받는다거나 또는 人間의 本性은 團體이다 라고 하는 眞理를 認識하는데 失敗할 것이라는 理由로서 攻擊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萬一에 Mill이 둘 또는 그 以上の 原理를 主張하려고 實際로 試圖하고 그가 하는 바를 實際로 모르고 冊의 서로 다른 點에서 하나의 原理에서 다른 原理로 옮겨 다녔다면 이 事實을 認識한다는 것이야말로 Mill의 批判者들이 過去에 識別하는데 失敗한 어떠한 것을 最少한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關係된다(concerns)는 “...에 對해서 重要하다”는 것과 또는 利害가 介入된 것을 暗示할 수도 있다. 따라서 Mill이 어떤 사람의 行爲가 “他人에게 關係된다”고 할 때에만 社會的 統制가 許容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他人에게 影響力(effects)을 갖는다는 行爲를 意味한다고 억지로 假定할 수는 없다.

關係된다는 뜻의 模糊性은 影響力 보다는 차라리 利害에 基礎된 條理있는 理論을 숨길려는 데 責任이 있고 利害가 單一의 一貫된 原理를 남는데 특히 使用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는 그와 같이 解釋할 수 있다.

Mill은 自身에게만 關係되는 缺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種類의 惡때문에, 卽 어떤 사람이 自身에게만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缺點 때문에 他人들의 손에서 매우 甚한 刑罰을 받을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¹⁵⁾

따라서 Mill은 個人들이 항상 서로 影響을 미치는 方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Mill의 순전히 自己에게만 關係된다는 말을 우리가 解釋할 때 萬一 他人에게 影響力을 안가지는 行爲를 意味한다고 보면 Mill은 크게 矛盾되고 더구나 이러한 解釋에 反對되는 境遇에는 더욱 決定的으로 矛盾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ill은 또한 社會에 責任지는 個人의 行爲의 範圍를 限界지우려고 했는데 이러한 行爲는 他人의 利害를 해치지 않은 데 存在한다.

卽 明白한 法的 規定이나 慣習의 理解에 의해 權利(rights)로 考慮되어야 하는 特定한 利害를 害하지 않은 데 存在한다. 行爲는 他人의 어떠한 法的 權利를 犯하는데까지 가지 않고 他人을 害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完全한 程度의 社會統制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法보다는 輿論이 刑을 賦課하게 된다.¹⁶⁾

이와같이 볼 때 Mill이 어떠한 利害를 保護하는데 있어 輿論보다는 차라리 法을 마음에 두고

15) J.S. Mill, *op. cit.*, p. 328.

16) *Ibid.*, p. 325.

있고 이러한 利害는 다음에는 權利로 考慮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合法的 權利라는 것은 明白하며 다른 利害는 法的 保護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影響力보다는 利害에 關心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그가 權利와 利害가 같거나 類似하다고 (그렇지 않은 것이 事實이지만)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 述語들이 서로 매우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는 것을 숨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Mill은 이런 式으로 利害를 權利와 連結시킴으로써 利害와 影響力을 混同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利害와 影響力은 아주 다른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져야만 하게 되었다.

따라서 Mill의 自己保護의 原理는 他人의 利害에 影響을 미치느냐 如否에 있지 他人에게 影響을 미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 分明해졌다.

Mill이 自身에게만 影響을 미치는 行爲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自身の 利害만을 影響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 自身에게만 關係되는 것과 他人에게 關係되는 것이라는 範疇의 使用에 있어 만들려고 企圖한 區別은 첫째로 優先的으로 行爲者의 利害에 影響을 미치나 他人의 利害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行爲와 둘째로 優先的으로 他人의 利害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行爲者 自身の 利害도 介入될 수 있을지라도) 사이의 區分으로 그것 自体를 나눌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影響力보다도 利害가 重要하다면 自由의 原理는 個人行爲에 대한 社會的 統制는 利害가 危脅받거나 實際로 影響을 받을 境遇에만 行使되어야 한다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利害의 基準은 무엇인가?

利害는 반드시 要求라고 解釋될 必要는 없고 어떤 것에 대한 個人의 要求가 他人에 의해 妥當한 것으로 認識되고 最少限 考慮할 價値가 있는 것으로 着做되는 條件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利害에는 客觀的인 要素가 있는데 그것은 利害가 保護될만한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觀察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確實히 利害는 더 重要的 考慮에 그것들을 從屬시킬만한 強制的인 理由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無視될 必要가 없다고 느낀다. 利害는 바로 獨斷的인 願望, 浮動하는 幻想이나 번덕스러운 要求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Mill은 모든 다른 個人은 모든 점에서 그가 해야만 하는대로 行動해야 한다는 徹底한 主張을 每他人의 道德的·知的 甚至於는 身體의 完全性에 賦與된 利害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보면서 그리고 "모든 個人의 絕對的 社會的 權利"가 되는 것으로 보면서 憤怒로써 이를 拒否한다.¹⁷⁾

Mill과 禁酒論者들은 무엇이 合法的으로 權利로 主張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利害에 대한 損害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인가를 討論하고 있다.

17) Ibid., p.344.

그러나 重要한 것은 人間이 그의 利害라고 主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不一致 바로 그 事實이다.

萬一에 우리가 利害는 聲音에 의해서 일어나는 金錢上的 損失에 反對되는 것으로서 聲音과 같은 干涉에 의해서 影響받은 것이라는 主張에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Mill이 거기에서 그것이 作用하기를 分明히 바랐었던 範圍에서 Mill의 原理가 作用하는 것을 妨害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利害로서 看做될 수 있는 것에 대해 異論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明白한 事實이다.

따라서 自己保護의 原理는 그것의 使用에 대해 論爭의인 作用을 不可避하게 賦與해줄 價値—要素를 必然的으로 包含할 것임은 틀림없다.

사람들은 基準이 다르므로 그들의 利害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一致하지 못할 境遇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狀況에 適用하기가 어려운 影響力보다는 차라리 利害에 基礎를 두는 原理를 만들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利害의 概念 自体가 模糊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一般的으로 受諾된 定義가 있다고 假定할지라도 무엇이 利害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未定の 數 많은 境遇에 있어 公開된 問題일 것이다.

萬一 Mill이 利害보다도 차라리 權利와 關聯하여 그의 原理를 形成했다면 그는 人間の 權利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하나 以上の 많은 方式에서 理性的으로 答辯될 수 있는 問題이므로 正確히 똑 같은 難題에 부딪혔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境遇마다 社會干涉의 利·不利를 따져보아야 하나 Mill은 個人 自身の 利害가 影響받게 되는 境遇에는 社會的 統制를 許諾하는 問題는 있을 수 없고 行動의 自由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境遇에는 그의 原利는 明白한 指針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利害가 影響받게 된 境遇에는 一般福祉가 每 特殊한 境遇에 干涉에 의해서 增大되기 쉽느냐 아니냐를 考慮하도록 忠告되며 裁量의 余地가 있다. 이 原理를 自動的으로 適用하는 範圍는 누구의 利害도 損傷하지 않는 境遇에 限定된다.

利害가 損傷하느냐 안하느냐의 問題는 쉽사리 決定될 수 있는 것이라고 假定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Mill은 干涉이 增大되는 것을 憂慮해서 그것을 牽制하기 위해서는 얼핏 보기에 統制權이 一般福祉에 대한 呼訴에 의해서 無効化 될 수만 있는 곳으로부터 非干涉地域을 區劃지어려고 했다.

그는 他人의 利害가 影響받지 않은 곳에서는 社會는 干涉하지 말 것을 強調하고 있는데 우리가 他人의 利害를 損傷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統制 또는 禁止시켜주기를 願해야만 하

는 어떠한 行動은 없을 것인가 하는 深刻한 疑問이 생긴다.

예를 들어 Mill은 禮儀範節에 대한 違反을 他人에 대한 攻擊이라는 範圍에 넣고 있으나 이런 攻擊은 主題와 間接적으로만 關聯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⁸⁾ 그것은 他人의 利害를 損傷한다는 根據에서 禮儀範節에 대한 違反을 禁하는 것은 利害의 概念이 擴大되는 것을 危險視했기 때문이다.

또한 Mill이 一般的 利害의 主張을 認識했다는 것은 分명한데 그가 사람들은 相互間에 意見 交換을 하도록 許容되어야 한다고 하는 主張에 있어서, 煽動家가 利益을 얻거나 社會와 國家가 惡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增加시킴으로써 利益을 보는 境遇에는 問題는 疑問스럽게 된다.¹⁹⁾

Mill이 비록 이런 種類의 行動을 禁하는 것을 合理化하는데 關한 明確한 結論에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興味로운 것은 —그의 原理가 이러한 種類의 問題에 대해 明白한 指針을 줄 수 없다는 確認과는 別途로— 社會統制의 合法性에 대해 決定하기 前에 우리가 考慮해야 할 要素로서 公共福祉에 대한 그의 呼訴이다.

公共福祉에 反對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他人의 利害에 害로운 것으로 그 行動을 分類해야 한다는 것을 意圖했는가?

여기에서 다시 利害의 概念을 擴大 또는 縮少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되돌아오게 된다.

利害의 概念에서 公共福祉를 除外시켜 그 概念을 縮少시키는 境遇에는 우리가 禁止하기를 願하는 行動을 禁할 수가 없게 되고 그 反對로 一般利益과 社會道德을 包含하여 擴大시키는 境遇에는 Mill이 分明히 抑制되지 않기를 바랐던 行動을 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은 自明하다.

그러므로 萬一에 價値와 基準을, 甚至於 述語의 制限된 意味에서 우리가 人間의 利害라고 생각하는 것에 包含시킨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公共利益이 要求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形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傳統的인 Mill의 自由原理에 대한 解釋이 全혀 새로이 規定되어야 할 段階에 이르게 되는데 대해서 Rees는 다음과 같이 喝破하고 있다.

批判者들의 이러한 假定은 거짓이며 그것은 Mill이 그의 教科書에서 가끔 使用한 單語의 形式을 觀察하는데 失敗하고 이른바 自身에게 關係되는 多様な 行動이 行爲者 以外の 他人에게 자주 그리고 甚至於는 害롭게 影響을 끼칠 수도 있다는 Mill의 確固한 主張을 그것의 充分한 價値로서 取하는데 失敗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主張하겠다. 이러한 主張을 立證하기 前에 나는 Mill의 原理에 대한 傳統的인 說明이 人間의 行爲에 관한 그의 分類에 대한 바로 이러한 假定을 만들었다는 나의 主張에 대한 證據를 간단히 一瞥하기를 바란다.²⁰⁾

18) Ibid., p.355.

19) Ibid., p.356.

20) J.C.Rees, op.cit., p.116.

Rees는 이어 Mill의 原理에 있어 單純한 影響力보다는 利害가 重要하다는 論據를 이 利害라는 述語가 使用된 단 하나 또는 두개의 分離된 引用節의 證據에 든 것이 아니라고 前提하고 事實上 이 述語는 冊全体를 통해서 最少限 15番이나 보이며 그것이 使用된 多少의 引用節은 Mill의 主張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으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¹⁾

Ⅲ 消極的 自由와 積極的 自由

다른 한편 Mill이 消極的 自由의 絕對規範化를 明白히 宣言한 點을 看過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個人의 自由는 Bosanquet가 말하는 「最大限의 空白」으로 規定된다는 것이다.

그는 個人의 幸福을 위해서도 그의 自由를 侵害할 수 없다고 規定함으로써 積極的 自由의 概念을 否認하였다. 이러한 個人主義의 規範이 社會와 個人의 關係에서 「絕對的 原則」이 되어야 한다고 Mill은 斷定한 것이다.

그러나 Mill은 그의 消極的 自由의 原則을 一貫性있게 固守하지 않는다.

그는 人類가 自由롭고 平等한 對話를 통하여 進歩할 能力이 생기기 以前의 先史時代에는 自由란 無意味한 것이라고 말한다.²²⁾

自由란 向上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適用되므로 向上할 能力이 全無한 사람에게는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自由는 獨立된 窮極的 價値가 아니라는 것인가?

自由보다도 幸福을 目的으로 하는 有用이, 特히 進歩할 수 있는 能力을 保持한 人間의 幸福을 위한 有用이 至上의 規範이 된 것이다.

그러나 「自由」와 「進歩」는 同意語가 아니다. 特定한 自由가 特定한 向上이나 進歩의 必要條件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經驗的 分析으로 證明될 經驗的 問題이지 一般的으로 宣言될 수 있는 規範的 命題는 아니다.

이 點에 대해서 Isaiah Berlin은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即 Mill은 다음의 두 가지 見解를 混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모든 強制는 人間의 慾望을 沮害하는 限, 이것이 他人의 慾望을 制止하는데 適用된 다 할지라도 더욱 幣害를 가져오는 나쁜 것이며 強制의 反對인 非干涉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좋다는 古典의 形式에 있어서의 「消極的」自由의 概念이다.

다른 하나는 人間은 眞理를 發見하며 또는 Mill이 贊成하는 어떠한 種類의 性質—제 각기

21) Ibid., p.123.

22) J.S.Mill, op.cit., p.240.

다른 點에 도달할 수 있는 恐怖가 없는 創意的인, 獨創的인 獨立된, 非一律的인, 其他의 一을 發展시키려고 하며 自由로운 條件에 있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眞理가 發見되며 이러한 性質이 育成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自由主義的 見解이나 兩者는 附合되는 것이 아니며 兩者의 關聯은 經驗的인 것에 不遇하다.

누구나 眞理 또는 自己表現의 自由가 獨斷이 모든 思想을 粉碎할 경우에 登揚하리라고는 主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史實은……誠實, 眞理, 愛護 및 열렬한 個人主義가……清教徒 Calvin主義者들 같은 嚴格한 敎理를 가진 社會에서 成長하는 傾向이 있었음을 例示하고 있으며 萬一 이것이 옳다면 人間의 素質을 發揮케 할 必須條件으로서 自由를 主張한 Mill의 見解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의 두 가지 目標가 併立할 수 없다면 Mill은……自由에 대한 그 自身の 高尚한 說明 自体에 있어 致命的인 Dilemma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²³⁾

Mill의 立場에 이렇듯 混線의 幾微가 도는 것은 結局 自由에 대한 Mill의 定義도 무엇으로부터의 自由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自由인지를 具體的으로 規定하지 못하는 데서 緣由하는 것 같다.

그러나 Mill이 自由의 正當性을 證明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세 가지 論證은 그의 消極的인 自由의 概念이 점차 積極的인 自由의 意味를 包含하기 시작한 것을 反映한다. 첫째 自由는 眞理에 到達하는데 有用하고 둘째 人間의 個別的인 獨自性을 涵養하고 셋째 自由는 그 自体만으로도 價値가 있다는 것이다.²⁴⁾

또한 意思表現의 自由에 관한 論議에 있어서, 沈默當한 個人的인 意見이 옳은 경우에는 社會는 眞理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에 對照되는 眞理를 좀 더 明確하게 認識할 機會를 놓치게 되므로 自由의 拘束은 左右間에 損失을 招來한다고²⁵⁾ 그는 主張하는데 이러한 立場은 적지 않은 妥當性도 지니고 있지만 他人의 意見을 沈默시키는 것은 自己만이 항상 絕對的으로 옳다는 假定下에서만 可能하다는 見解는 經驗的인 次元에서 도저히 立證될 수 없는 것이다.

X는 Y의 意見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 意見의 傳播를 두려워할 理由가 있을 때는 Y의 意見을 沈默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Mill의 見解가 多少 難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은 別問題로 하고 우선 自由가 眞理라는

23) Isaiah Berlin, op.cit., p.25(9月號).

24) 李洪九, 積極的인 自由와 消極的인 自由—J.S.Mill의 「自由論」을 中心으로— 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韓國政治學會, 1969. 12月號, p.219.

25) J.S.Mill, op.cit., p.249.

다른 規範에 의하여 正當化되었다는 것을 指摘하여야 된다.

眞理가 虛僞보다도 좋다는 것에 反對할 사람은 없지만 眞理가 自由보다 上位規範인지 아닌지를 決定하는 것은 전혀 다른 問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曖昧性은 Mill이 意思表示의 自由에 專念한 나머지 個人的 意見은 敘述의이거나 規律의 內容을 가질 수도 있다는 點을 疎忽히 取扱한 結果일 수도 있다. 敘述의 意見의 抑壓이 眞理의 獲得을 不可能하게 할 수 있지만 規律의 意見의 制約은 不道德이나 惡을 助長할지는 몰라도 眞理를 가로막는다는 必然性은 없다. 倫理的으로는 首肯하기 어려운 意見의 抑壓이 곧 眞理의 否認은 아니다.

眞理의 窮極의 重要性으로 自由를 正當化하는 것은 Mill이 積極的 自由의 意味를 그의 自由觀의 內容으로 삼기 始作한 것을 말한다.

Mill은 自己에 대한 行動과 他人에 대한 行動을 區分하고 他人에게 關係되지 않는 範圍에서 個人이 自由롭게 自己의 獨自性을 主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한다. 단지 Mill이 自由를 個人的 獨自性을 發展시키는데 必要的 文化와 文明과 教育의 一部로 생각한다는 것은 指摘되어야만 한다. 自由를 愛護하여야 될 自明한 理由는 그것이 人間을 그들이 到達할 수 있는 至上의 狀態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Mill의 立場은 Green이나 Bosanquet가 말하는 積極的 自由의 見解와 너무나 類似한 것이다.

結局 Mill이 自由를 아끼는 가장 큰 理由는 그것이 個人的 獨自性和 創造性을 涵養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獨自性이나 創造性은 天才나 善良의 것이며 그것을 大衆의 「集團的 平凡」으로부터 守護하기 위하여 主張된 消極的 自由의 規範이 窮極的으로는 積極的 自由의 意味를 前提로 한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

自由의 概念은 누구를 위한 自由인가가 具體的으로 規定될 때에 그 意味가 明白하여 진다는 것은 Mill의 경우에도 妥當한 命題이다.

Mill이 論議하는 自由가 大衆에게도 適用되는 것이라면 各 個人에게 消極的 自由를 賦與하는 것이 곧 그들의 獨自性和 創造性을 具現시키는 길이라는 假定은 經驗的 次元에서 그 妥當性을 잃을 수도 있다.

國民으로부터 創造性이나 獨自性의 展示를 期待하려면 消極的 意味를 넘어서 規範을 內包한 積極的 自由가 充滿한 雰圍氣를 助成하여야 될지도 모른다. 獨自的 創造性을 土台로 삼으려는 Mill의 消極的 自由는 經驗的 次元보다도 抽象的 次元에서만 可能할지도 모른다.

또한 Mill이 論議의 一貫性을 堅持하지 못한 直接的 理由는 그가 消極的 自由와 積極的 自由의 概念의 差異를 明確히 認識하고 있지 못하였다는데에 있을 것 같다.

첫째 自由를 어떤 行動을 하는 것으로 定義할 때 自由는 能力과 結付된다. 自由가 能力으로 理解되는 것이 妥當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둘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願하는 바를 알 수 있다고 假定하는 것은 곧 그가 무엇을 願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願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實證할 수 있는 方法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願하여야만 理性的 人間이라고 하는 假定은 理性에 관한 規範的 定義를 前提로 하여야만 된다. 그러한 理性的 作用을 必要條件으로 하는 自由가 消極的 意味를 가졌는지 積極的 意味를 가졌는지를 Mill은 明白하게 區分하고 있지 않다.

IV 結 論

Mill은 數 많은 衝突하는 方向으로 人間の 本性을 擴大하기 위해 그것에 充分한 自由를 賦與하여야 한다는 重要性이라는 單一의 眞理에 관해서 「自由論」을 썼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消極的 概念의 自由가 主題가 되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人間에게서 自由를 輕減, 剝奪한다는 뜻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自由를 賦與한다는 面에 強調點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Rees의 分析을 肯定할 경우에 우리는 Mill이 社會에 責任지는 個人的 行動의 範圍의 限界가 他人의 利害를 害치지 않는데 存在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明白한 權利로 理解되어야 하는 特定한 利害를 害치지 않는데 存在하고 그러한 權利以外的 것에 害를 끼치는 경우에는 적어도 法律은 適用되지 않는다.

더구나 個人이 自己自身の 利害가 影響받게 되는 경우에만은 社會的 統制가 있어서는 안되며 個人的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 領域에 있어서만은 그의 自由의 原理는 明白한 指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行動 即 煽動家의 行動과 같은 境遇에 대해서는 그의 自由의 原理가 明白한 指針을 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利害라는 概念에 價値와 基準을 包含시킴으로써 公共利益이 要求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形成함으로써 보다 精鍊化된 理論을 構築하여 有用한 指針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Mill이 自由의 消極的 概念과 積極的 概念을 明白히 區分하지 않으므로써 論議의 一貫性이 維持되지 못한 點은 事實이나 “自由의 擁護는 干涉을 防止한다는 「消極的」 目標에서 成立한다”는 Berlin의 말을 認定한다면 自由의 消極的 概念을 固守하는 Mill의 理論의 價値는 決코 輕減될 수 없을 것이다. Berlin은 이어서 말한다.

“人間에 대하여 그가 그의 目標을 選擇하지 않는 生活에 服從하지 않으면 處罰한다고 危脅하여 그의 前面의 門戶를 閉鎖한다면 아무리 門이 열렸을 때 훌륭한 展望이 있더라도 또는 여기에 排列된 動機가 아무리 慈愍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가 스스로 生活하는 人間이라는 眞理에 背馳되는 罪惡이다……. 市民으로서의 自由와 個人의 自由에 관한 모든 主張이나 擄取와 屈從, 公的 權威에 의한 侵犯 또는 慣習에 의한 大衆의 催眠 또는 組織화된 宣傳에 대한 모든 反抗은 이 個人主義의이며 서로 意見이 區區한 人間의 概念에서 나오는 것이다.”²⁶⁾

그리고 이러한 自由의 消極的 概念은 Mill이 Elite를 重視하는데서 보는 것처럼 一般大衆을 위하여 強調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比較的 새로운 것으로서 侵害되지 않고 人間에게 提供된 이 慾求는 個人이나 社會의 어느 便으로 보든지 高度文明의 證據임을 알 수 있다.

그 權利 自体를 神聖視하는 人間關係의 領域에 있어서의 私的이라는 事實이 意味하는 바는 모든 宗教의 根源으로 보아 發展한 國家에서는 文藝復興이나 宗教改革에 比하여 오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自由의 이 消極的 概念은 原則적으로 그 根源이 아니라 統制의 領域에 關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概念은 論理的으로 民主主義 또는 自治와 關聯된다.

그러나 個人의 自由와 民主主義原則사이에 必然的인 關聯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누가 나를 統治하느냐”의 質問에 관한 對答은 “어느 程度로 政府가 나에게 干涉하느냐”의 質問과는 論理的으로 旣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區別에서 結局 消極的 自由와 積極的 自由의 커다란 對照가 成立하게 된다.

한편 Berlin은 消極的 自由의 程度는 다음과 같은 諸條件에 依存한다고 함으로써 Mill의 自由의 原理를 보다 精鍊化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 a) 어느 程度로 나에게 可能性이 公開되어 있는가?
- b) 이러한 可能性을 하나씩 實際化하는 것이 얼마나 容易하고 困難할 것인가?
- c) 나의 性格과 環境을 가지고 이러한 可能性이 他人과 서로 比較되어 나의 生活設計에 있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
- d) 이것이 具體的인 人間行爲에 의하여 어느 程度로 閉鎖되고 開放되어 있는가?
- e) 單純히 行爲者 뿐 아니라 그가 生活하는 社會의 一般感情에 대하여 어떠한 價値가 있어서 各種 可能性을 追求하는 것일까?²⁷⁾

모든 이러한 重要性이 「復合」되어야 하며 必然的으로 正確하며 또는 明白하지 않는 結論이 過程에서 抽出될 것이다.

여기에는 比較할 수 없는 각각 程度가 다른 自由가 있으며 아무리 計劃한대도 이것은 單一規

26) I. Berlin. op. cit., p. 24(9月號).

27) Ibi., p. 28(9月號).

模의 重要性에서 抽出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概念의 未確性和 여기에 內包되는 規準의 多樣性은 主題自体에서 나오는 屬性이며 우리의 不完全한 計算方法(또는 正確한 思想이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 Erich Fromm은 積極的 自由란 物質에 의한 人間의 補壓을 終末짓기 위하여 各個人이 그의 本然的 目的을 實現시킬 수 있는 社會的 經濟的 狀況에 놓여지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²⁸⁾

즉 積極的 自由는 곧 人間의 非人間化를 가져오는 疎外의 克服이다. 따라서 人間의 心理的 疎外를 制度化하는 社會的 經濟的 環境속에서 消極的 自由를 부르짖는 것은 窮極的 次元에서는 無意味한 行動에 지나지 않으며 奴隸的 狀態의 維持를 裝飾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Fromm의 말을 認定한다면 지금까지 Mill이 重要視했던 消極的 概念의 自由가 疎外 現象을 克服하지 않는다면 매우 危殆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ll이 主로 意識했던 것은 公權力이나 社會의 統制나 干涉과 같은 것으로부터의 消極的 自由의 保障이었는데 이제는 疎外를 克服하지 않는다면 消極的 自由는 有名無實하게 된다는 점이指摘되고 있다.

이 점 새로운 觀點에서 Mill의 消極的 概念의 自由를 確保하는 問題를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만큼 Mill의 理論을 補強하는 契機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 E.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Reinhart and Winston, 1941), pp. 265~271.

— Summary —

A Study of J. S. Mill's *On Liberty*

Jin-o Jung

The concept of negative freedom seems to be the subject in John Stuart Mill's *On Liberty*.

And he says, in the case of conduct which affects no person's interests but one's own, there can be no question of permitting social control and restraint. Therefore, he provides us with a clear directive only when we can be sure that other people's interests are not involved.

On the one hand, in the case of the instigator his principle of freedom does not give clear directive, but values and standards can be entered into the concept of interests in order to give useful directive.

And, although h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s of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in case of freedom which matters, the negative concept is more important.

Thus, we can't judge J. S. Mill's position on diminishing negative freedom.